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가단53634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247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2가단536345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4. 4. 2.

판결선고 2024. 4. 23.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11. 2. 체결된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21. 11. 4. 체결된 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대금 관련한 2021. 11. 2. 및 2021. 11. 4. 체결된 합계 6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이유로 같은 금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6394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18. 'C은 원고에게 34,303,580원과 그중 33,640,000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8. 9.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4. 10. 3. 확정되었다(갑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금액은 2022. 11.

24. 기준 67,571,022원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피고는 매도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중 2021. 11. 2. 10,000,000원, 2021. 11. 4.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C을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갑 3, 6, 을 6).

이는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다. C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사실조회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C에 대하여 5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매수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를 반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C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김진성

별지